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9호

「부산광역시청 부속의원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부 산 광 역 시 장

## 부산광역시청 부속의원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직원의 건강증진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인 부산광역시청 부속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부속의원의 목적 명시(안 제1조)
- 나. 부속의원의 위치, 진료시간, 진료대상 규정(안 제2조~제4조)
- 다. 부속의원의 구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6조)
- 라. 부속의원의 진료비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8조)

###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청(참조 : 건강정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강정책과(전화 051-888-3254, FAX 051-888-3319, E-mail : zanoah@korea.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4. 기타사항

이 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 행정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규칙 제 호

### 부산광역시청 부속의원 운영규칙 제정안

부산광역시청 부속의원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5조 및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청 부속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청 부속의원(이하 “부속의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청 내에 둔다.

제3조(진료시간) 부속의원의 진료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청(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진료대상) 부속의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3.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제5조(구성) ① 부속의원에는 원장과 원장을 보조하기 위한 직원을 둔다.

② 원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면허의 자격을 갖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으로 한다.

③ 원장을 보조하는 직원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호사 또는 의료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④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부속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업무) 부속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질병진료, 건강상담 및 지도
2. 보건교육
3. 응급처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보건의료 업무

제7조(진료비) ① 부속의원의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하되, 본인부담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료비 외에 진료에 따른 재료비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부속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로 본다.

제8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범위에서 부속의원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